

경 기 도 보

제4612호

의왕시 고시 제2012-165호

고 시

1. 의왕도시관리계획【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】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12. 11. 20.

의 왕 시 장

I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2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- 1)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 - 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- 가. 교통시설
 - ① 도로
 - 도로총괄표

구분	유형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
	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
합계	기정	28	5,427	95,659.2	4	2,353	44,925.6	11	1,286	13,477.3	13	1,788	37,099.4
	변경	28	5,427	95,751.1	4	2,353	44,925.6	11	1,286	13,477.3	13	1,788	37,191.3
대로	기정	2	1,629	31,281.1	1	501	1,486.7	-	-	-	1	1,128	29,794.4
	변경	2	1,629	31,373.0	1	501	1,486.7	-	-	-	1	1,128	29,886.3
중로	기정	7	2,744	55,689.1	3	1,852	43,438.9	1	399	5,942.2	3	493	6,308.0
소로	기정	19	1,054	8,532.1	-	-	-	10	887	7,535.1	9	167	997.0
기개설 현행도로	기정	-	-	156.9	-	-	-	-	-	-	-	-	-

※ 대로3-8호 도로 폭원확장(중교시설2)에 따른 면적변경

도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② 주차장(변경없음)

나. 공간시설(변경없음)

다. 유통 및 공급시설(변경없음)

라. 공공·문화체육시설(변경없음)

마. 방재시설(변경없음)

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단독주택용지(변경없음)

나. 공동주택용지(변경없음)

다. 준주거용지(변경없음)

라. 도시지원시설용지(변경없음)

마. 주차장용지(변경없음)

바. 공공청사(변경없음)

사. 교육시설용지(변경없음)

경 기 도 보

제4612호

아. 종교시설용지									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		비 고		
			위 치	면적(㎡)					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
계		4,332.3	-	4,424.2	감)91.9	4,332.3			
1	G1	1,221.5	포일동 659종	1,221.5	-	1,221.5			
	G2	2,085.0	포일동 678종	2,176.9	감)91.9	2,085.0			
	G3	1,025.8	포일동 648-1종	1,025.8	-	1,025.8			
종교시설용지 변경사유서									
가구 번호	변경내용			변경사유					
G2	· 면적감소(2,176.9㎡→2,085.0㎡)			· 보행자안전을 위한 보도설치에 따른 면적변경					
※ 그 이외의 사항은 변경사항 없음									
II. 의왕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승인 도면 : 덧붙임(계재생략). 끝.									
여주군 고시 제2012-212호									
고 시									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2011.04.21.)하고 여주군고시 제2012-166호(2012.9.13)로 결정(변경)한 여주군계획시설(도로:중로2류16호-삼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) 사업에 대하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(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) 및 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)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(실시계획의 고시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									
2. 관계도서는 여주군청 도시과(☎ 887-2354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									
2012. 11. 20.									
여 주 군 수									
1) 실시계획(변경)인가의 개요									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)									
┌ 당초 :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삼교리 산38-2번지 일원									
└ 변경 :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삼교리 368-3번지 일원									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(변경없음)									
- 종 류 :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2류16호)사업									
- 명 칭 : 여주삼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(중2류16호선) 개설공사									
다. 사업의 규모 (변경없음)									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
결정	중로	2	16	15.0	집산도로	680	국도37호선	중로2-17	
시행	중로	2	16	15.0	집산도로	680	삼교리 319-10	삼교리 388-28	